

요약

- 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유용한 법률관계인 신탁과 보험이 결합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보험금 수령 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신탁 제도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상품으로 적극적 운용 요소가 없는 자산의 보관·관리만 요구되므로 증권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자산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유가족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 및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으로 재산승계신탁으로서 유연대용신탁에 해당함
-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의 엄격한 신탁 대상 제한은 질병·상해보험금까지 확대하고, 최소 수탁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도 폐지하여 수탁 금액 기준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약관대출 금지도 완화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신탁재산 감소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 투자형 상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보험설계사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권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경쟁 행위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해 민·상법의 법리가 신탁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유추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써 신탁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현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과 관련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용한 제도인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즉 재산관리 수단으로써 유용한 법률관계인 신탁과 보험이 결합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해 신탁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의 경우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발생이나 관계자의 사망 등 보험수익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는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의 위험관리 기능과 신탁의 재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¹⁾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²⁾

본고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및 법제 현황

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1) 전문 수탁자를 통한 체계적인 보험금 관리 수단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하는 신탁³⁾으로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는 보험금 수령 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신탁 제도로 주요 대상은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자산관리에 취약한 계층 등 유가족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및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으로 재산승계신탁으로서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한다.

1) 한기정(2009),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보험연구원, p.80;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주식신탁법(제3판)』, 박영사, pp. 621~622

2)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11. 11.),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3)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타인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법률관계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임. 세계적인 신탁제도의 동향에 대해서는 STEP(2021);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Trusts”, pp. 9~16 참조 바람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상품으로 적극적 운용 요소가 없는 자산의 보관·관리만 요구되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⁴⁾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방식을 통해 위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위탁자 본인 또는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은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방법으로 신탁선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설정 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제 현황

1)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

유연대용신탁의 법적 기반 제공(법 제59조), 신탁 설정과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의 법적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을 규율하는 법률로 신탁 가능한 자산의 종류 제한,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신탁재산 한정(법 제103조), 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규제(법 제108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되며, 보험계약 대출이 금지(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업법

보험업법이 2003년 개정되면서 보험회사 겸영업무에 신탁업이 추가되었다. 법 개정 당시 신탁업 추가에 대한 입법취지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탁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법 제11조)에 있었다.⁵⁾

4) 이종기(2025),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신탁판매채널 확충방안」, 『월간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p.7

5)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수익자 실질과세원칙(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든 신탁이 과세 대상에 해당함

3.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가) 신탁 설정 관련 규제

1) 보험금청구권신탁 대상 규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가목 1)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 설정 시 최소 보험금액 3천만 원 이상 요건을 부과하면서 생명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신탁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⁶⁾, 일본⁷⁾, 대만⁸⁾은 신탁재산으로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허용하는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다.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신탁재산에는 최소 금액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에만 적용하는 것은 신탁 설계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⁹⁾ 비교법적으로 일본은 법령상 최소 금액 규정이 없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⁰⁾

신탁재산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주요국의 보험금신탁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약관대출 금지 규제

약관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규정은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신탁 설정 불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나목 4)), 대출 상환 후에도 신탁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¹¹⁾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신탁계약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어들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여 보험계약대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¹²⁾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약관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규제는 보험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약관대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여 신탁계약 체결 시 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양희석(201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법학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 19

7) 新井 誠(2023),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活用のグランドデザイン 第1巻 信託制度のグローバルな展開と我が国の課題”, 日本評論社, p. 72

8) 新井 誠(2023), p. 120

9) 양희석(2024),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보험학회지(제140집)』, 한국보험학회, p. 112; 이영경(2025),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과 과제」, 『금융브리프 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p.16

10)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https://www.pru-trust.co.jp/trust/pdf/Pamphlet_GIB.pdf), p.19; 信託協会(2025), “2024 日本信託”, p. 7

11) 양희석(2019), p. 112

12)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p21

3) 신탁수익자의 범위

신탁수익자의 범위 제한과 관련하여 신탁수익자는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변화된 가족 형태(사실혼, 약혼자, 동성 파트너 등)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¹³⁾ 참고로 일본은 개인·단체 구분 없이 수익자 인정 가능, 신탁회사의 조건만 충족하면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 수익자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NGO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화된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개인 수익자 범위를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단체를 수익자로 지정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하여 기부 신탁 활성화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나) 보험금청구권신탁 권유 자격 규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운용형 신탁이 아닌 관리형 신탁에 해당한다.¹⁵⁾ 현행 신탁상품 권유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성 신탁에 적합한 규제가 설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는 투자성 신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투자성이 낮고 보호 목적이 강한 상품이므로 과도한 규제 적용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 관리형 신탁에 한해 보험설계사 권유를 허용하되, 투자성 신탁은 여전히 신탁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등 비투자성 신탁 전담 조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탁 권유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생명보험협회 주관의 별도 자격시험 및 교육 프로그램 투자권유대행인보다 간소화된 요건으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불공정경쟁행위 금지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정비

신탁업무 취급 기관이 용자나 출자 조건으로 신탁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¹⁶⁾ 자본시장법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¹⁷⁾ 용자보증과 신탁상품 권유가 결합될 경우,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의 구조 중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구조는 법적 제한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탁자의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으로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13) 양희석(2024), p. 113

14)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15) 이종기(2025), p. 7

16) 지광윤(202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pp. 88-90

17) 일본은 신탁경영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 예컨대 수탁자가 피상속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금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업을 경영하는 수탁자의 경우 자기거래 해당성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다. 즉 수탁자가 보험자와 동일하면 이중 지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불공정경쟁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에 구체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을 추가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예시하면 현행 제108조 제9호 “...신탁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탁법상 요건 충족과 수익자의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탁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은행에 대한 특칙, 신탁업무의 독립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법률관계와 민·상법 유추적용 여부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 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신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지 문제 된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속대체신탁은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신탁법 제59조 제1항)과 신탁종료·변경권(신탁법 제99조 제1항 본문) 등으로 수익자의 감시라는 전통적인 신탁법 원리를 수정하므로 상속대체신탁은 전통적인 상속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¹⁹⁾

이러한 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수익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하고,²⁰⁾ 신탁 종료 후 재산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되는 경우 위탁자가 생존 중이라면 수익자 재지정 가능, 사망 시에는 신탁 목적 달성이 곤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약서에 연속수익자,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²¹⁾ 수익권 포기 시 신탁재산의 귀속처를 신탁계약서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금이 유류분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입법적 해결이 어렵다면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되 비율 산정은 위탁자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²²⁾

신탁 법률관계에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예컨대 신탁수익자가 위탁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 상법 보험편상 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3; 양희석(2020),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p. 541; 안성포(2021),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 p. 170; 오영표(2021),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실무상 쟁점」, 『신탁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신탁학회, p. 79

19) 정순섭(2021), 『신탁법』, 지원출판사, p. 68

20) 양희석(2024), p. 122

21) 양희석(2024), p. 120

22) 양희석(2024), p. 124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위탁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수익권 박탈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성과 보험제도의 선의성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험업법상 신탁업의 부수업무화

보험업법상 신탁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같은 관리형 신탁의 부수업무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보험업법상 부수업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하위 규범, 예컨대 시행령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 ‘간접적 신탁 관리’ 또는 ‘신탁 연계 서비스’ 형태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하고, 구체적으로 생전신탁 연계 상담, 민사신탁 컨설팅, 치매 대비 자산관리 안내 등의 업무를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 규제 개선 방안 정리

구분	보험금 관리수단	신탁재산범위 확대	신탁 설정 관련 규제 개선	권유 자격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문제점	거액의 보험금 관리 문제로 분쟁 발생 가능	신탁재산 범위 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금액: 3천만 원 이상 약관대출 시, 신탁 설정 불가능. 수익자 범위 협소 (직계 존비속, 배우자) 	투자권유대행인만 신탁상품 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신탁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채널화 우려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방안	신탁계약 활용	상해·질병보험도 신탁 범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금액 한도 약관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수익자 범위 확대: 법정상속인(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및 공익단체로 확대 	보험설계사 활용 (신탁자문사 라이선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정비

주: 신탁설정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2〉 법제 개선 방안 정리

민·상법 유추적용	약관규정을 통한 의무주체 명확화	신탁업의 부수업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 결격 보험금청구권신탁 상속재산성 인정 (무상증여의 실질,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고려) 	위탁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 면제 약관상 명문화	보험업법상 부수업무의 정의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 제1항 유추적용)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수익권 인정(상법 제733조 제4항 유추적용) 	위탁자 사망 시 사망통지인 지정	시행령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 ‘간접적 신탁관리’ 또는 ‘신탁 연계 서비스’ 형태 (생전신탁 연계 상담, 민사신탁 컨설팅, 치매 대비 자산관리 안내)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방안 고려

주: 신탁법률관계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4. 결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보험회사와 같은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관리한 후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으나 향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관리와 재산승계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개선 및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유연하고 다양한 신탁 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